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보조 지원 도입〉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71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보조 지원 도입	2
※ 참고자료	9
1. R&D 융자지원 관련 사례	9
2.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0.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보조 지원 도입(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은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위주의 지원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융자 및 보조 지원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u>출연</u>)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u>출연할 수 있다.</u>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u>지원</u>) ① ----- ----- ----- ----- ----- -----출연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및 융자, 보조의 대상·조건, 절차·상환 방법 등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¹⁾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²⁾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즉 연구개발사업(R&D)을 지원하고 있음.

중소기업 대상 R&D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원되는데, 출연은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임.

개정안의 내용은 이러한 출연 형태의 지원으로 인해 출연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을 수 있고, R&D 사업의 필요성 및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출연 외에 보조나 융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그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6월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을 발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R&D 재정투입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융자 지원방식의 도입이 제시되어 있음³⁾.

기존 출연 위주의 R&D 지원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 및 융자 등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음. 예를 들어, 개별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화 단계 R&D의 경우 지원분야에 따라 출연보다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⁴⁾, 시제품 제작이나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화 단계 등에서는 기술보증 등을 통한 융자형 R&D의 도입이 타당하며, 사업 단계별로 출연과 융자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⁵⁾, 출연 방식에 기반한 천편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투·융자 연계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⁶⁾ 등임.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안), 2024.6, 본문 p9

8. R&D와 연계된 새로운 지원방식 확대

- ☐ (투자연계 R&D) 민간의 선별기능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검증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과제에 투자를 확대

* 예) 민간(VC 등)이 기업을 선별·투자 → 이후 정부가 매칭 투자

** ①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 ② 민간자본(대기업 CVC 등) 공동출자·운영

- ☐ (R&D연계 융자) R&D 후 추가R&D·양산 등 사업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강화(기술보증 등)- 혁신기업의 R&D 자율성을 높이고 상용화·사업화 성과를 기업 스스로 극대화하도록 융자형 R&D 도입 추진

* (핀란드, 이스라엘) 실패 시 상환 부담없는 사업화 R&D 지원, 성공시 100% 상환

4)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에서는 이러한 R&D 지원방식이 기존 융자방식의 중소기업 정책 자금과 유사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R&D 지원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고, 출연이 아닌 융자 방식으로 R&D 자금을 지원할 경우 현재 R&D 관리, 정산, 기술료 납부 등의 행정절차가 최소화되어 기업체 입장에서도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융자된 자금이 연구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국회예산정책처, 국가연구개발사업분석(총괄), 2019.10, pp213-215).

5) 진영현,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통권 제262호), 2019.5, p18

6) 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Ⅱ, 2024.5, p327

[표 1] R&D 연구단계별 정부자금지원 방식 구분(예시)

구 분		아이디어검증	시제품제작	시제품보완	양산준비, 사업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산업 기술	기 업	출연+용자		용자	
공공 기술	대학· 출연연	출연		출연+용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연구개발사업분석(총괄), 2019.10, p214

이 중 용자형 R&D 사업 지원의 경우, R&D 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환수된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출연금에 비해 기업 선호도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도입이 부진하였다는 의견도 있음⁷⁾.

관련 사례로, 핀란드, 영국 등은 이미 기업 R&D 지원을 용자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응용기술 개발지원’ 사업⁸⁾,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

7) 진영현,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용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통권 제262호), 2019.5, p17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업⁹⁾ 등의 도입 사례(참고자료 1)가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대상 R&D 사업에 대하여도 융자 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동 기금을 통한 직접융자 방식의 지원은 기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이미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¹⁰⁾.

융자형 R&D 도입 사례인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그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 저리 지원”, 2024.1.1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경우 조문 문언상 ‘융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유사한 취지로 융자 지원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29)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산업기술혁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협력사업의 지원
2.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융자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운영 중임. 이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형 R&D의 재원¹¹⁾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존 조항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른 R&D 출연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융자 지원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한편, 개정안의 R&D 사업 지원방식 중 보조의 경우,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는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출연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지원방식의 다변화 차원에서 도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11) 재원과 관련하여서는, 융자형 R&D 사업 전용 기금 신설 등을 통해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회수된 원금과 이자를 모두 R&D 사업만을 위해 재투자하는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진영현,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통권 제262호), 2019.5, p20)

중소벤처기업부는 융자, 민간투자 등 R&D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중소벤처창업 및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중소기업의 R&D 융자(시중은행)에 대한 기술보증, 이차보전 등의 지원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467

【참고자료】

1

R&D 융자지원 관련 사례(중소벤처기업부)

□ 타 부처 사례

구 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산업부)	정보통신융용기술 개발지원(융자) 사업 (과기부)
근거법률	산업기술혁신법	정보통신산업법
사업목적	국가첨단전략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	정보통신분야 R&D 지원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기술분야	ICT 및 ICT기반 융·복합 분야
예산재원	산업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과기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용도	사업화, 기술개발	기술개발
지원규모	(연간) 900억원	125억원 ('23년 기준, 사업종료)
지원내용	저리대출 (최저대출금리 1.3% 적용)	저리대출 (최저대출금리 1.6% 적용)
대출기간	5년	5년
대출상환	2년 거치기간,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기간, 3년 분할 상환

□ 해외 사례

국가	상품명	대출최대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특 징
핀 란 드	D&P Loan	2백만 유로 (필요금액의 70%)	7~10년 (최대 20년)	1% (거치기간 무이자)	3단계로 분할지급 (최초 30%, 지출시 50%, 종료시 20%)
영 국	Innovation Loan	2백만 파운드	최대 7년 (개발 3년)	3.7 ~ 7.4%	3단계 운영 (개발, 거치, 분할상환)
스 페 인	PID-CDT	17.5만 유로 (필요 금액의 85%)	최대 14년 (개발 최대 4년)	Euribor 이자율 ('23.7월말 3.5%)	선지급(35%) 후 분할지급
터 키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1백만 달러 (필요 금액의 50%)	6년 (개발 2년)	무이자	6개월 단위로 분할상환
호 주	R&D Cash Flow Loans	4백만 달러	1 ~ 2년	변동 TCV 금리 ('23.7월말 4.1%)	
뉴 질 랜드	R&D Loan	40만 뉴질랜드 달러	13년 (상환 10년)	3%	1년 내 전액 상환시 무이자

2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따른 R&D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회계기금	지원 형태	2021	2022	2023	2024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일반회계	출연	9,288	10,888	10,888	10,88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일반회계	출연	288,783	315,299	364,113	423,205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일반회계	출연	201,103	222,871	252,870	94,210
공정·품질기술개발(R&D)	일반회계	출연	48,031	42,705	42,042	12,394
창업성장기술개발(R&D)	일반회계	출연	408,578	381,556	442,332	531,683
중소기업 R&D역량제고(R&D)	일반회계	출연	14,972	14,283	14,283	1,000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	일반회계	출연	-	33,057	32,176	43,665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R&D)	일반회계	출연	-	2,750	6,000	3,622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R&D)	일반회계	출연	-	2,400	5,733	3,317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일반회계	출연	-	-	1,995	863
기술공유형통합기술개발(R&D)	일반회계	출연	3,790	11,150	12,557	4,595
디지털전환통합기술개발(R&D)	일반회계	출연	8,844	15,325	15,141	2,756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일반회계	출연	-	-	1,513	971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	일반회계	출연	-	-	3,800	1,667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일반회계	출연	36,815	35,865	35,865	34,36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소특회계	출연	104,684	107,249	104,619	40,604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소특회계	출연	31,100	30,135	27,396	8,465
창업성장기술개발(R&D)	소특회계	출연	29,555	29,575	13,869	1,983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R&D)	소특회계	출연	24,923	35,055	29,364	10,389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R&D)	소특회계	출연	5,013	7,353	8,709	4,354
지역특화산업육성	지특회계	출연	83,588	81,082	80,181	80,181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특회계	출연	122,707	100,117	106,886	46,787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지특회계	출연	-	-	1,750	1,021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지특회계	출연	-	5,013	5,013	5,013
지역특화산업육성+(R&D)(제주)	지특회계	출연	-	10,010	9,002	3,620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지특회계	출연	3,291	2,962	2,796	2,796
지역특화산업육성+(R&D)(세종)	지특회계	출연	3,372	3,079	3,026	1,310